



# 가축개량기술정보

社団法人 韓國畜人工授精師協會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내

발행인: 이재우 전화: (02)587-0629

편집인: 방효범 (02)586-9408

FAX: (02)586-9408

## 96년을 보내면서



회장 이재우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96년을 보내면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다복하심을 기원합니다. 또한 한해 동안 인공수정사업에 몰두하여 고생하심은 물론 소 전산화 사업에 참여하신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면 광우병파동, 고름우유사건, O-157사건 등 가격폭락 요인의 돌발사건들은 정말 우리를 괴롭게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욕저하된 양축농가와 하락된 가격의 유지 문제는 우리 모두 고충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개량의 역군임을 자처하면서 양축농가 지도에 혹 게울리 하거나 앉았나 반성도 해 보아야겠습니다. 더 앞서서 개방화의 물결을 넘을 수 있는 우리의 각오와 의식의 전환 또한 더 없이 필요한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 부터 실시된 소 전산화 사업에서 보

여 준 열의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조직이 해 낸 선택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농림부 추진위원회에서의 활동과, 공청회 토론자로서의 활동 등을 통한 일거수 일투족이 오직 조금이나마 축산발전과 수정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면 이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산화 요원으로 선정이 되었고 회원 여러분은 비록 고생은 되었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행정관서와의 유대관계 개선 등 업무적 협조면에서 특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의 조직이 없었으면 감히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을 것입니다.

전국을 실태조사차 농림부 조사반에 편성되어 몇 개 도를 방문조사 해 본 결과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행정담당자나 전산화 요원 수정사가 축산발전을 위해서 해야한다는 사명감에 모두가 잘 감당하고 있

더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담당한 관계자와의 교류가 원활이 되고 있고 칭찬을 해 줄 때에는 더 없이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소전산화 사업은 한두해에 종결될 업무가 아니고 연년이 우리의 축산이 있는 한 전개될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양축농가를 지도, 선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농림부 소 전산화사업 추진위원으로서 저 개인적인 애로는 흑간의 수정사 때문에 전체가 욕이 되는 일을 목격하였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연 120억 예산 중 35억 4천만원이 회원에게 수수료로 지급토록 추진까지 해 놓았는데하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신기술 습득 문제를 언급하려 합니다. 우리 협회가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고 교육이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아쉽다면 필수 전담 진행요원이 아직 없어 업무 추진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라도 자격면허를 갖고 행사는 업종에는 보수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단합도 하고 기술정보 교환도 하고 신기술의 발전 상황이나 내용을 직접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에 수정란 이식을 현장에 뿌리 깊게 정착시킨 회원이 많이 생겨났음은 다행이며 추진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협회 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수정란이식 교육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고 회원 수정사를 추천위탁 교육을 하는 형태로 매년 100명 계획 중 대다수를 추천했습니다. 각 도별로 지회장이 지역에서 자격 기준에 적합한 회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도지회는 수정란이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회원별로 일정액의 자비를 각출하여 실습용 빈우와 기자재를 구입, 해당 도 종축장과 연계하거나 대학 연구실과 협조하여 일정 기간동안 기술 습득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도지회별 활동은 개인적인 능력배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축

산 발전을 위하고 개방화시대에 준비하는 일체의 노력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셋째 우리의 회관건립 특별기금 모금운동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현재 협회의 운영도 그리 원활치 못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회원 여러분이 협회에 기대하는 상황에서 협회를 위해서 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껏 도와 주신 회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비가 온 다음 땅이 다져진다고 하듯이 고난과 역경은 언제고 산재해 있었고 더 있어서는 안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조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또한 내실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의 임직원 모두는 열정을 다하여 뛰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조금씩 더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업무에 관련된 기자재의 구입에서 부터 축산 현장의 불합리한 점의 제보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모든 것도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교육, 연수, 회의 등 종합적인 행사가 가능한 우리의 집을 갖는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만이 가능한 우리의 이 사업은 96. 2. 29 대의원 총회에서 전적인 지지와 기대 속에 의결되었고 현재 추진위원회 결성을 마치고 사업계획이 마무리 되었으며 전국 각 도별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은 물론이고 아무런 대과 없이 2기에 걸친 4년의 임기동안 믿고 따라주시고 믿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축산조직단체로서의 위상정립, 협회조직의 강화, 회원 지위향상, 회원복지 문제, 행정적 내부 처리 문제, 대외적인 각 단체 조직간 유대관계 개선 및 제도적 보호책 마련 등 미력한 힘으로 최선을 다해 왔음을 지면을 통해 밝히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짐질 수 있는 반성의 여지로 남겨두고져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선발요령 해설

축산법 제17조 제6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본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대상자 차출은 다음에 의거 선발하고 있으며 차후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민간 수정사는 본 협회에서 선발하고
2. 축협소속 수정사는 축협중앙회에서 직접 선발한다.
3. 수의사는 본 교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의로 받을 경우는 무관함. 94년 12월 법 개정)
4. 민간수정사는 95년말 총 1,400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A조 B조로 구분 분리하여 A조는 94년 대상이고 B조는 95년 대상으로서 A조는 짝수년도가 되고 B조는 홀수년도가 해당됩니다.

예시1)

갑이란 수정사가 A조로(94년) 교육을 받았을 경우 96년도가 해당되며

예시2)

갑이란 수정사가 A조(94년)대상으로 해당년도에 사정이 있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95년도에 받았을 경우에는 96년도에 재차 받아야 함.

예시3)

갑이란 수정사가 94년 A조로 교육을 받고 또 재차 95년도에 받았다고 할 때 96년도에 다시 받아야 됨(2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시4)

A조는 94, 96, 98.....에 받아야 하고  
B조는 95, 97, 99.....에 받아야 합니다.



## 회원소식

\*전라북도 권혁윤 도지회장님이 제16회 전국 한우 경진대회(96. 10. 28. 경기도 안성군 소재 축협중앙회 교육 수련원)에서 영예의 농림부장관 표창을 수상함

\*전라남도지회 소속 최낙진(순천시 인제동) 소장님과 박준희(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소장님이

전라남도 한우품평회(96. 10. 5)에서 명예로운 전라남도 지사님의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장길용(전라남도 광양군) 본협회 감사님과 유해룡(광주광역시 광선구) 소장님이 축협 전라남도 지회장의 감사패와 시계 1점씩(80,000원 상당)을 수상하였음.

## 본 협회 소식

■ 본 협회에서는 축산법 개정에 따른 아래 법조문 사항을 개정 또는 신규로 삽입할 것을 농림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음

- ① 수정사 면허 자격증에서 전문대학 이상 출신이라도 반드시 가축인공수정사 실시 시험을 필하도록 하는 조항
- ② 수정사가 수정소를 개설할 때 협회를 경유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

- ③ 필요에 따라 수정사 면허증을 일제히 갱신할 수 있는 조항(면허증 소지자의 관리상태 측면에서).
- ④ 수정사의 직업을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정확하게 명시토록 하는 건의문 등을 건의하였음.

## 협회 하반기 활동 상황(7월~12월)



- \* 7. 4 수정사 양성반 특강(강원도 종축장)
- \* 7. 5 가축육종학회 창립총회 참석(축산회관)
- \* 7. 11 각도청에 보수교육 협조 요청
- \* 7. 12 농림부장관 초청 간담회 참석
- \* 7. 15 소전산화 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 \* 7. 16 축산발전 추진위원회 참석
- \* 7. 19 '96 상반기 감사 및 3/4분기 이사회
- \* 9. 6 각도 사무장회의 개최
- \* 9. 14 농림부장관 표창 상선
- \* 10. 15 소전산화 추진위원회 참석
- \* 10. 18 수정사보수교육 제5기(전라도지역)교육
- \* 10. 25 수정사보수교육 제6기(경상도지역)교육
- \* 10. 28 제16회 한우경진대회 참석
- \* 10. 29~30 수정사 보수교육 제7기, 제8기(중부권)교육

- \* 11. 1 수정란이식학회 참석(전남 나주)
- \* 11. 8 제1회 농민의날 장관초청 간담회 참석
- \* 11. 22 4/4분기 이사회 개최



### '96년도 수정사 보수교육 결과 보고

도 별	대상자	수료자	비 율	계	연기원	반 송	수익사	폐 업	무단불참	비 고
강 원 도	80	68	85%	12	3	1	-	1	7	
경 기 도	148	108	73%	40	2	5	5	15	13	
충청북도	64	40	63%	24	3	1	1	-	19	
충청남도	136	78	57%	58	4	6	-	-	48	
전라북도	61	47	77%	14	-	-	-	-	14	
전라남도	84	74	88%	10	3	-	6	-	1	
경상북도	111	60	54%	51	6	13	1	2	29	
경상남도	133	85	64%	48	2	8	-	-	38	
제 주 도	12	8	67%	4	1	-	-	-	3	
축 협	139	106	76%	33	-	-	-	-	33	
계	968	674	70%	294	24	34	13	18	205	

### '96년도 수정사 이식 교육 실적

(( )는 민간수정사 수치임)

도 별	1	2	3	4	5	6	7	8	9	10	계
	6월 10~14	6월 17~21	7월 1~5	7월 8~12	9월 9~13	9월 16~20	10월 14~18	10월 14~18	11월 4~8	11월 11~15	
경 기 도	2(1)	1(1)	2(1)	2(1)	3(1)	3(1)	1(1)	2(1)	1	1	20(8)
강 원 도									1(1)		1(1)
충청남도	2(1)	2(1)	13%	2(1)	2(1)	2(2)	2(1)	4(3)	1(1)	3(3)	21(14)
충청북도	1(1)	2(1)		1					1	2(1)	7(3)
전라남도	3		2	1	2(1)		1		2(1)		12(2)
전라북도	1	1	1(1)		1	2(1)	2		1		9(2)
경상남도		1	2(1)	1		1	1	1	2	2	11(1)
경상북도	2(1)	1(1)	2(1)	1	2(1)	2(1)	2(1)	3(2)	2(2)	2(2)	19(12)
광주광역시		1(1)									1(1)
인천광역시	1		1	1(1)							3(1)
계	12(14)	9(5)	10(4)	9(3)	10(4)	10(5)	9(3)	10(6)	11(5)	10(6)	

# 일본의 인공수정 제도

한국 증축 개량 협회  
기획차장 김 윤 식

## 1. 가축 인공수정의 역사

일본의 인공수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1896년에 벌써 新山박사가 미국으로부터 인공수정 기구를 가지고 와 下總御料목장에서 많은 두수의 말에 실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는 이것에 이어 인공수정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와노프 연구가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었다.

1912년에 石川박사가 소련의 이와노프연구소에 연수하고 인공수정의 기술을 습득해 일본에 귀국하여 石川박사를 중심으로 수의학 및 의학전공자가 인공수정에 관한 연구를 개시하였고 당시로서는 많은 연구보고가 나왔다. 그 연구 내용으로는 정자의 생리에 관한 연구와 3개의 종마목장(種馬牧場)에서 실제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세계 인공수정 역사에 있어서 대서특필 된 사건이었다. 이 시기가 일본의 인공수정의 제2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광범위한 실용화에는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적은 두수의 말에 실시하였지만 이것도 역시 시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1930년 이후 즉 제3기에 돌입해 인공수정의 의의라면 말 이외의 가축에 있어서도 인정되어 염소, 양, 돼지, 토끼 등이 연구의 대상이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실제의 번식에도 이루어졌다. 그 때 상황은 트리코모나스증의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해서 지방에서는 상당수의 소가 인공수정에 의해 번식되고 번식장애를 줄일 목적으로 많은 기술자가 양성되었다.

그 후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적으로 보급을 가능하게 된 가축은 말이었다. 1937년에 정부의 계획에 의해 말의 증산 시설이 각지에 설치되고 비교적 많은 말에 실시하게 되었다. 농용말, 군대에서 사용될 말의 수요에 따라 생산이 증가되었다. 이것이 밑받침이 되어 인공수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농림성 마사 연구소에서 기술연구가 이루어져 매년 인공수정 두수가 증가되었다. 그 후 농작과 운송의 기계화에 따라 말의 생산이 급격히 저하되고 인공수정 두수도

감소하게 되었다.

제4기라고 하는 시기는 소의 인공수정이 세계적으로 실시되면서 연구면에서나 보급면에서 성과가 매우 컸다. 그리고 1950년에 가축개량 증식법을 제정하여 인공수정의 보급이 확대되었다.

매년 비약적으로 인공수정 두수를 증가시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소에 있어서 인공수정에 의해 번식되고 있다. 이러한 동안 돼지, 염소 등의 인공수정에 관한 기초와 응용연구도 크게 진전되었고 이들 가축의 인공수정율이 1956년에 약10%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염소 인공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일본의 가축 연간 인공수정 두수와 보급률

최근에 일본의 가축인공수정 두수와 보급율을 보면 1986년을 기준해서 젖소는 99.5%, 육용우는 92.9%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에 동결정액 이용율은 젖소가 98.8%, 육용우가 96.2%를 차지하고 있다.

표1. 소의 인공수정 실시상황

(단위 : 1000두)

연도	젖 소		육 용 우		합 계	
	수정두수	보급율%	수정두수	보급율%	수정두수	보급율%
1951	98	69.1	182	35.2	279	42.3
55	262	91.8	486	74.1	748	79.5
60	574	96.5	590	86.4	1,163	91.3
65	906	98.2	470	90.7	1,376	94.5
70	1,228	98.7	594	94.6	1,822	97.4
81	1,478	99.3	593	92.1	2,071	97.1
82	1,482	99.4	614	92.2	2,099	97.2
83	1,517	99.4	593	91.8	2,110	97.1
84	1,580	99.4	570	92.0	2,150	97.4
85	1,584	99.4	546	91.9	2,130	97.1
86	1,594	99.5	543	92.9	2,137	97.7

표2. 말, 돼지 염소, 양의 인공수정 두수

연 도	말 수정두수	동보급율	돼지 수정두수	산양 수정두수	면양 수정두수
1951	7,792	4.3	5,143	3,604	3,189
55	10,154	6.9	23,235	30,214	4,442
60	18,129	15.2	47,320	34,582	1,066
65	9,020	13.9	105,255	7,736	872
70	720	-	98,114	5,425	203
80	56	0.2	66,836	-	-
82	184	0.7	52,499	-	-
84	239	0.9	45,310	-	-
86	29	0.2	37,102	-	-

표3 소의 인공수정에 있어서 동결정액의 이용

연 도	절 소		육 용 우	
	동결정액두수 (만두)	보급율 (%)	동결정액두수 (만두)	보급율 (%)
1965	2.1	2.3	0.3	0.6
67	20.9	20.9	7.6	1.2
69	75.4	57.8	9.8	14.9
71	113.6	89.2	24.7	45.4
81	145.5	98.4	58.8	99.1
82	145.8	98.4	60.7	99.0
83	149.6	98.6	58.7	99.0
84	155.9	98.7	56.2	98.7
85	156.5	98.8	54.3	99.4
86	157.5	98.8	52.3	96.2

### 3. 가축개량증식법안

일본의 법률은 가축의 개량증식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하고, 이것에 관련된 필요한 종축의 확보 및 가축수정란이식, 그리고 농업경영의 개선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제1조) 국

가나 각 도는 가축의 개량증식의 촉진에 유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개량증식법의 개정내역은 표4와 같다.

### 4. 가축인공수정용 정액보급 및 가축수정란의 양도등의 제한

일본에서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및 수정란을 양도하거나, 혹은 암축에 주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 외국으로 부터 수입된 가축인공수정용정액이더라도 외국의 정부기관과 타주령이 정한 자에 의해 발행되고 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또 믿을 만한 기재내용이 있는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을 양도하거나 또는 암축에 주입하는 경우

나. 소, 말 기타 외국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계되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이더라도 해당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의 채취용으로 제안한 수컷의 가축이, 성령(省令)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과 번식기능의 장애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종축증명서, 종축혈통, 능력 및 체형에 관한 등급 등이 분명해야 함.

다. 외국의 법령에 의해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 그 외 성령(省令)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사학, 용기에 담고, 또 봉인을 실시한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일 것.

라. 가축인공수정을 정확히, 또 위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채취되고, 또 처리된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일 것(제14조). 또한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인공수정 또는 가축수정란이식에 관한 사항을 가축인공수정전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대장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제15조).

표4. 가축개량증식법 개정 관련 시행법령등

(법 률)

1983. 11. 19 (5. 20 공포)	(A) 가축개량증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983. 법률 제49호
1983. 12. 2	(B) 국가행정조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	1983. 법률 제78호
1963. 12. 10	(C) 행정사무의 간소 합리화 및 정리에 관한법률	1983. 법률 제83호
1985. 7. 12	(D)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에 관한 나라의 관여 등의 정리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1985. 법률 제90호

(정 령)

1983. 11. 19 (11. 11 공포)	가축개량증식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1983. 정령제227호	법률 (A)
1984. 7. 1 (6. 21 공포)	농림수산성 조직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1984. 정령 제207호	법률 (B)

(성 령)

1983. 11. 19 (11. 11 공포)	가축개량증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1983 농림수산성령제40호	법률 (A)
1984. 3. 1	가축개량증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1985. 농림수산성령 제2호	법률 (C)
1985. 7. 12	가축개량증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1985. 농림수산성령제27호	법률 (D)

(고 시)

1984. 10. 6 (8. 6 고시)	종축의 등급판정기준을 정하는 등의 건	1984 농림수산성 고시 1542호
1984. 8. 6	수입정액 증명서의 발행자의 지정	1984년 농림수산성 고시 1543호

(통 달)

1984. 5. 16	가축개량증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대해서	59축A 제133호	사무차관
1984. 6. 4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강습회등의 가축인공수정 및 가축수정란 이식에 관한 강습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	59축A 제1654호	축산국장
1984. 6. 28	가축개량 증식법 제9조의 제2에 규정하는 수의사에 의한 진단에 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59축A 제2355호	축산국장
1984. 7. 14	학술연구용의 가축인공수정용액과 수입에 대해서	59축A 제2534호	축산국장
1984. 8. 6	1984년 8월 6일 농림수산성고시 제1542호(종축의 등급판정 기준을 정하는 등의 건)를 근거로 외국의 가축등록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59축A 제2708호	축산국장
1984. 10. 6	종축검사집무요령에 대해서	59축A 제3621호	축산국장

5.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등의 양식(시행규칙 제19조)

(1) 수정 대장의 양식

(시행규칙 제4호 양식1, 수정대장의 표지)

수 정 대 장			
종축	종축증명서번호	1979 후쿠시마 3 제 159 호	
	이름	스팜 토프시 에스코트	
	가축등록 기관명	가축등록 기관명	일본 홀스타인 등록협회
		등록번호	일 홀 열 43878
	종류와 품종	소(유용우), 홀스타인종	
	생년월일	1972년 8월 10일	
	혈통	아버지	글레나프론 라그아플 스팅그르(AR161614)
어머니		메주인 토프시 에스코트(AR161614)	
종축사양자 주소 이름 또는 명칭			

\* 비 고  
1. 위의 종부대장은, 종축마다 별권으로 해서 철에 보관할것.

종부 대장의 양식

(시행규칙 제4호 양식2, 수정에 관한 사항)

수정 시 안	번호	15	
	이름	섹시스 오스카 - 파리아 마나카와 4-2	
	가축등록기관명과 등록번호	일본종돈등록협회 종세 270506	
	종류와 품종	돼지, 랜드레이스	
	모색과 목적	백	
	생년월일	1977년 9월 16일	
	사양자의두수와 이름 또는 명칭		
적요			
종부년월일	1979년 2월1일	2월 22일	월 일 월 일 월 일
수정	발행년월일	1979. 9. 26	
	번호와 기인	NO. 7	
자축	성	숫 8, 암 7	
	생년월일	1979. 6. 16	
	적요		

\* 비 고  
1. 이 장부에는 자연 수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2. 돼지에 대해서는 - 자축의 성의 판에 암컷과 수컷을 자기 구별하여 수를 기재한다.

(2) 가축인공수정부등의 양식과 기재 예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앞면)

(시행규칙 양식 제7호 양식1)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증명서(뒷면)

(시행규칙 양식 제7호 양식2)

[참고] 주입 또는 체외수정기록

제1579호

동 결

가 축 인 공 수 정 용 정 액 증 명 서

정액 채취한 종축	종축증명서 번호	1992년 1 제 15호	종축의 등급	등급
	이름	파이노니아 아와테		
	가축등록기관명과 등록번호	JCAT NO. 423		
	종류와 품종	유용우 자지종		
정액채취년월일		1992년 12월 12일		
종축사양자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이와테 현 모리사카시 72-1 농림수산성 이와테 종축목장		㉞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의 등록번호(면허번호)와 주소 성명		동 상 북해도 일 제 73호 ○ ○ ○ ○		㉞

\* 비 고 (일본공인규격 A7)  
1. 이 증명서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의 용기에 첨부한다.  
2. 정액을 동결처리한 경우는 용기의 우측상단에 「동결」이라고 기재한다.  
3. 이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용기의 정액의 주입을 받은 암축의 사양가로부터 수정증명서의 교부를 요청받았을때는, 이 증명서를 수정증명서에 첨부한다. 수정증명서의 교부를 요구받기전에는, 이 증명서를 가축인공수정부에 첨부해 둔다.  
4. 후대검정 기간중 등의 보관정액 이라도, 검정종류로 그 정액을 인공수정소로부터 양도 할때에, 본 정액을 채취한 종모우의 등급이 바뀌어졌더라도 그 종축증명서번호와 종축의 등급을 같이 기입해도 상관없다.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의 등록번호(면허번호)와 이름	오카야마현 제 7235호 ○ ○ ㉞
주입을 받은 암축의 사양가또는 체외수정에 관여되는미수정란의 소유자의 이름 또는 명칭	○ ○ ○ ○
주입을 받은 암축 또는 체외수정란에 관여되는 미수정란을 채취한 난소를 채취한 암축의 이름	메르 코만도 에프프레스
가축등록기관명 및 등록번호	J CAJ NO 12095
주입 또는 체외수정년월일	1992. 12. 24

양도·경유의 확인

양도·경유의 확인	양도·경유의 확인	양도·경유의 확인
가축개량사업단 1992. 12. 13	오카야마현 가축개량협회 1992. 12. 20	

\* 비 고  
1. 확인란에는 경유기관이나 명칭과 년월일을 기재한다. 또, 년월일은 경유기관에서부터 공급한 날을 기입한다.

(3) 수정증명서의 양식  
(시행규칙 양식 제10호)

제123호					
수 정 증 명 서					
종속	증명서번호	NO 25475	이름	로메오 스키아라-크 도라마	
정역을 주입한 암속	이름	마담 린다 콘콘게스트			
	가축등록기관명 등록번호	일몰월 2414837			
	종류와 품종	소(유용우),홀스타인종			
	모색과 복경	흑백,우축 영덩이 작은백반 2			
	생년월일	1975. 12. 7			
	사육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 ○ ○ ○			
정역주입년월일	1979. 11. 9				
상기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용정역을 암속에 주입한 것을 증명한다.					
1979년 11월 9일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록번호 (면허번호) 후쿠시마현 제234 호					
주 소 후쿠시마현					
성 명 ○ ○ ○ ○ ○					
(가축인공 수정용정역증명서 또는 정역채취에관한증명서 (을) 를 여기에 첨부한다.)					

※ 비 고  
1. 복사식의 용지를 사용해 1부는 정역을 주입한 암속의 사양자에게 건네주고, 복사한것은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보관해 두어야 함.

(4) 정액 채취에 관한 증명서의 양식  
(시행규칙 양식 제6호)

제 45 호				
정액채취에 관한 증명서 (갑)				
정역을 채취한 종속	종속증명서번호	1979년 가고시마 3 제 146호	종속의 등급	급
	이름	화 인		
	가축등록기관명 등록번호	전국화우등록협회 고 2294		
	종류와 품종	유용우, 후모과종		
정역채취년월일	1979. 8. 25			
정역을 채취한 가축인공 수정사의 면허번호와 주소, 성명	카고시마현 421호 카고시마현 일치군 일침촌			
정역의 채취량과 성상	7cc, 85冊			
정역의 과외배출	난황원중액 7배			
상기와 같이 가축 인공 수정용 정역을 채취한것을 증명한다. 1979년 8월 31일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번호 카고시마현 제 421 호	주 소	인
(※) 종속사양자		주 소	성 명	인
(비 고) 이 증명서는 정역을 채취한, 가축인공수정사와 그 종속의 사양자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공업규격 A5)				

※ 비 고  
1. ※ 인의 관에는 정역을 채취한 가축인공수정사가 종속의 사양자에 대해서 교부할 경우는 기재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의 관에는 종속의 사양자가 정역을 채취한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해서 교부하는 경우는 기  
재 불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정역을 동결 처리한 경우는 용지의 우측상단에 **동결** 이라고 기재할 것.

(5)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의 채취와 처리에 관한 사항  
(양식 제9호 양식2)

종속	종속증명서번호		이름	종류와 품종		생년월일	사양자의주소와 성명또는명칭	
	1983	표고 5		복수	육용우 육모과종		1983.5.5	효고현미방군미방리
채취 년월일	채취 시각	채취량	색	년	세	대	정자수	활력과 생존률
								기형률
								정역과 외배출
								동결후의 활력과 생존률※
								가축인공수정용 정역증명서번호

정액의 양도(※)				적	요
년	월	일	가축인공수정용 정역증명서번호		
			양도량	양도처의 주소와 이름또는 명칭	

※ 비 고  
1. 이 장부에는 종속마다 작성해서 가축인공수정용정액의 채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2. 정역을 채취하여 봉을 하지 않고, 그 정역에서 암속에 주입해 또는 체외수정을 했을때는 적요란에  
그 정역채취에 관한 증명서(을)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종속의 사양자이면서, 종부대장(양식제4호 양식3호)에 기재한 경우  
는 이 장부의 기재 불 필요치 않는다.  
4. ※ 인의 관에는 정역을 동결처리하지않는 경우는, 기재 불 필요치 않는다.  
5. (※) 인의 관에는, 정역을 채취한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정역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  
재한다.

(6)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의 주입에 관한 사항  
(양식 제9호 양식3)

주 입 한 암 속	번호	3 9 2			
	이름	레크사이드 카운테스 마리린			
	가축등록기관명 등록번호	일몰월 2392661			
	종류와 품종	유용우, 홀스타인종			
	모색과 복경	흑, 흑, 적축다리흑반 1			
	생년월일	1973. 1. 23			
주 입 경 역	사양자의주소와 이름또는명칭	○ ○ ○ ○			
	주입년월일	1983년 7월 10일	8월 21일	월	일
	종속의 이름	미소노시엔헤르핀	6 사이데선린돈		
수 정 증 명 서	가축인공수정용 정역증명서번호	35717	17825		
	발행년월일	1983년 10월 1일	12월 5일		
자 속	번호와 기인	NO 213	NO 48		
	성	암			
적 요	생년월일	1984. 5. 30			

※ 비 고  
1. 면양, 염소와 돼지에 관해서는 자속의 성의관에 송(♂)과 우(♀)의 별도로 그 무수를 기재하도록 함.  
2. 주입을 받은 암속의 사양자로부터 수정증명서의 교부를 요구받기전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역증명  
서를 첨부해 두도록 함



